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 일시 : 2013. 9. 30(월) 15:00 ~ 18:00
- 장소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9층 대강당

목 차

■ 발 제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안

김 혜 정(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 1

■ 토론 1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안에 관한 토론

이 미 성(서울시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1

■ 토론 2 : 사회복지관 표준인력마련의 필요성

윤 귀 선(서대문종합복지관 관장) 23

■ 토론 3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안에 대한 서울시 향후계획

윤 석 현(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 주무관) 26

발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안

김혜정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안

1. 연구추진 배경 및 개요

1. 연구추진 배경 및 목적

■ 성과중심의 현행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 2009년에 재단에서 수행한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4등급(갑, 을, 병, 정) 차등 지원
- 인력, 표준사업 및 중앙 정기평가결과가 주요 기준

(단위 : %, 천원)

운영비 지원기준별 배점 기준					13년 운영비 지급 수준		
배점(만점)	인적자원/표준사업				평가결과 (20%)	범 주	총지원액
	인적자원(50%)		표준사업(30%)				
	인력규모 (40%)	인건비 (10%)	표준사업비 (10%)	표준사업지수 (20%)			
4점 (상위 20%)	1.6	0.4	0.4	0.8	복지부 정기 시설평가결과 × 20% (‘12년 평가결과 적용)	갑 (상위 20%)	647,826
3점 (중상위 30%)	1.2	0.3	0.3	0.6		을 (중상위 30%)	632,181
2점 (중하위 30%)	0.8	0.2	0.2	0.4		병 (중하위 30%)	612,241
1점 (하위 20%)	0.4	0.1	0.1	0.2		정 (하위 20%)	587,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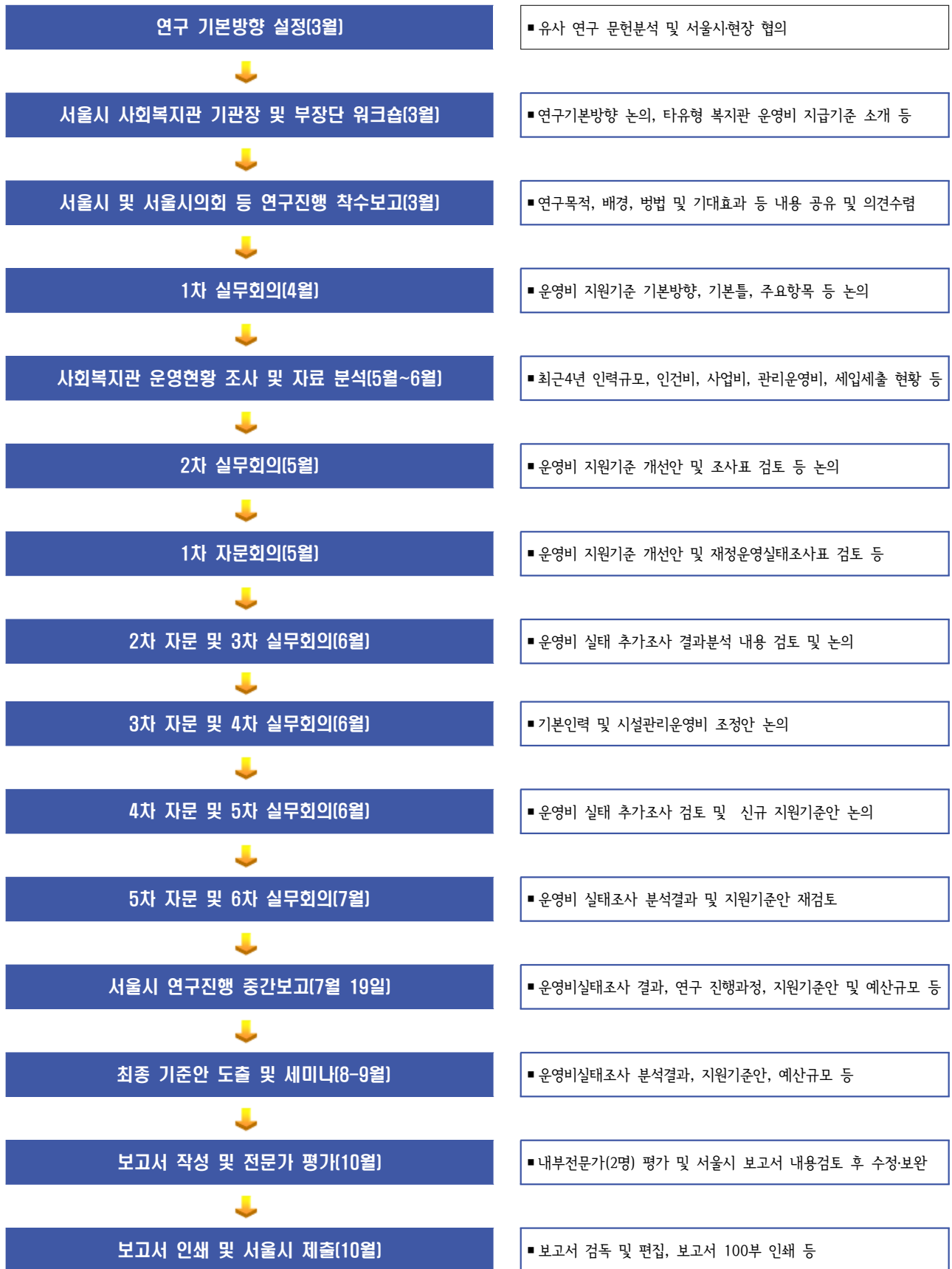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의 현장검증의 과도한 행정적 소요

- 운영비가 차등지원되는 기준들은 가변성이 높아 매년 현장실사를 통해 측정되어야 함
- 자치구 공무원 및 복지관 종사자가 2인 1조를 이루어 1주간 실사를 진행하나 실사팀 구성이 매번 상이하여 실사교육 내용의 이해도와 자료 검증에 문제점이 야기됨
- 또한 매년 2월에 실시되는 운영비 지원기준관련 실사교육부터 실태조사와 자료입력까지 6주가 소요되어 사회복지관의 예산편성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함

■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기준 요구

- 현행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으로 파생되는 과도한 행정적 소요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
- 사회복지관의 기본적 사업 수행과 아울러 시정 사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에 대한 서울시 요구 제기

2. 연구 추진현황



II. 재정 및 인력 현황

1. 사회복지관 재정 현황(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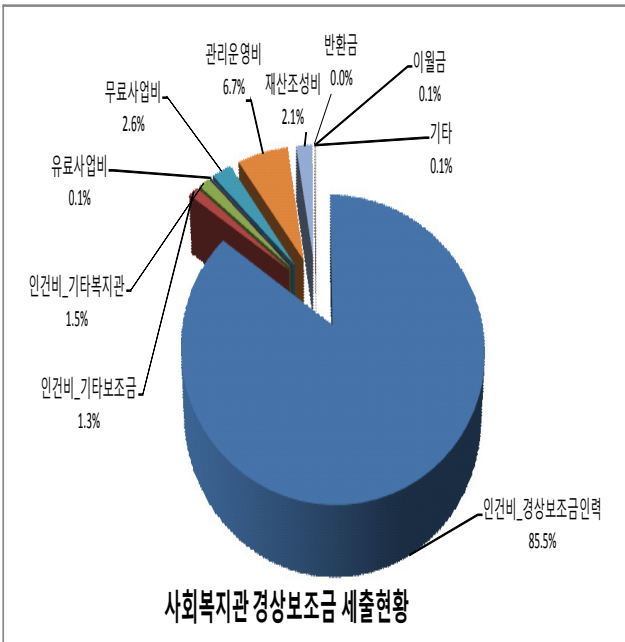
■ 세입 및 세출현황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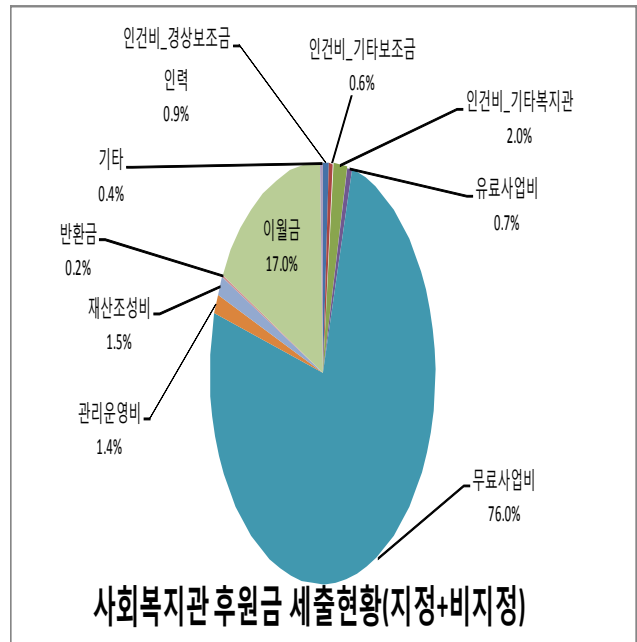
세입			세출				
구분	금액(총액/평균)	비율 (%)	구분	금액(총액/평균)	비율 (%)		
경상보조금	53,208,778,068 / 611,595,150	33.1	인건비	폴타임+서울시 보수기준+경상 100%	50,589,801,801 / 581,491,975 (82.4)		
종사자처우 개선비	1,127,095,476 / 12,955,120	0.7					
기 타 보 조 금	서울시	16,703,967,280 / 191,999,624 (45.2)				기타 보조금인력	7,281,755,220 / 83,698,336 (11.8)
	중앙 /자치구	20,271,978,324 / 233,011,245 (54.8)				기타 복지관인력	3,592,958,516 / 41,298,374 (5.8)
	소계	36,975,945,604 / 425,010,869 (100)	소계	61,464,515,537 / 706,488,684 (100)			
시설 기능보강비	2,823,940,526 /32,459,087	1.8	사 업 비	유료	13,090,467,477 / 150,465,143 (18.6)		
후 원 금	지정	17,371,084,484 / 179,083,345 (72.5)		무료	57,356,981,151 / 659,275,645 (81.4)		
	비지정	6,575,395,516 / 75,579,259 (27.5)		소계	70,447,448,628 / 809,740,788 (100)		
	소계	23,946,480,000 / 275,246,897 (100)	관리운영비	8,709,316,102 / 100,107,082 5.4			
사업수입	21,598,062,974 / 248,253,597	13.4	재산조성비	6,415,867,596 / 73,745,605 4.0			
법인전입금	7,365,289,455 / 84,658,499	4.6	반환금	417,062,662 / 4,793,824 0.3			
이월금	10,897,828,188 /125,262,393	6.8	이월금	11,214,024,155 / 128,896,829 7.0			
기타	2,724,635,869 / 31,317,654	1.7	기타	1,658,564,585 / 19,063,961 1.0			
계	160,668,056,160 / 1,846,759,266	100	계	160,326,799,265 / 1,842,836,773 100			

■ 주요 세입재원 별 세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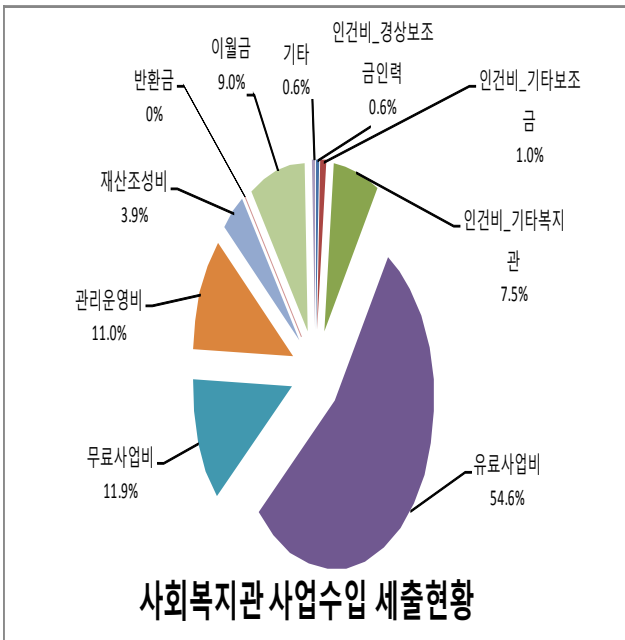
○ 경상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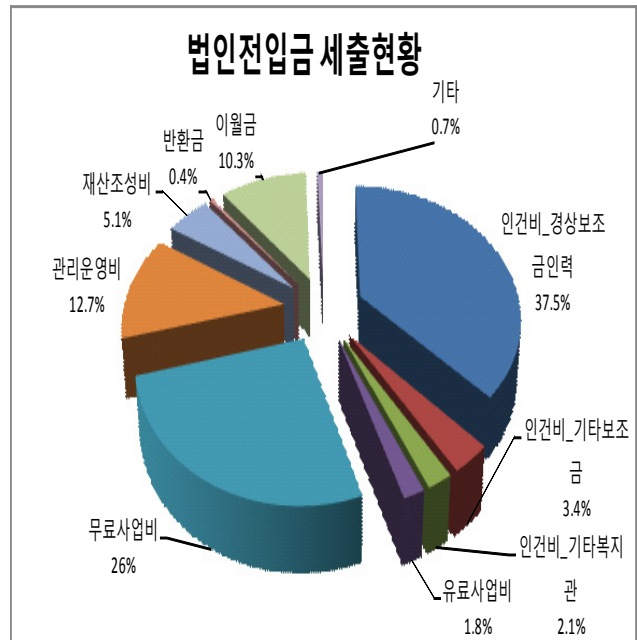
○ 후원금



○ 사업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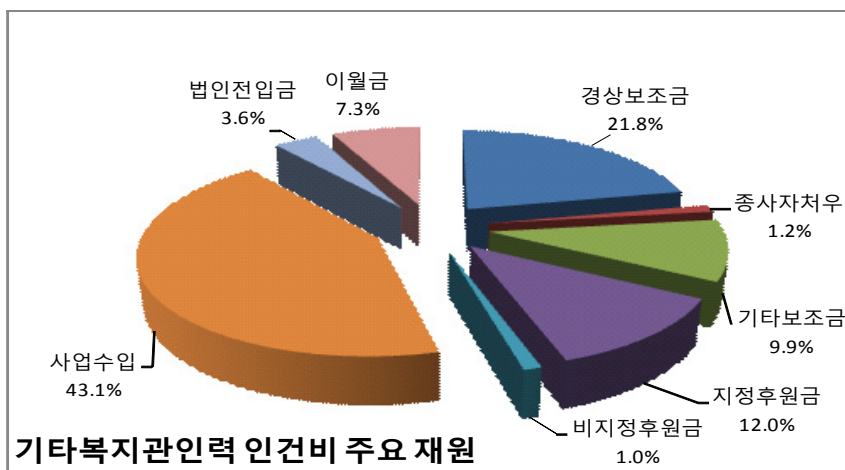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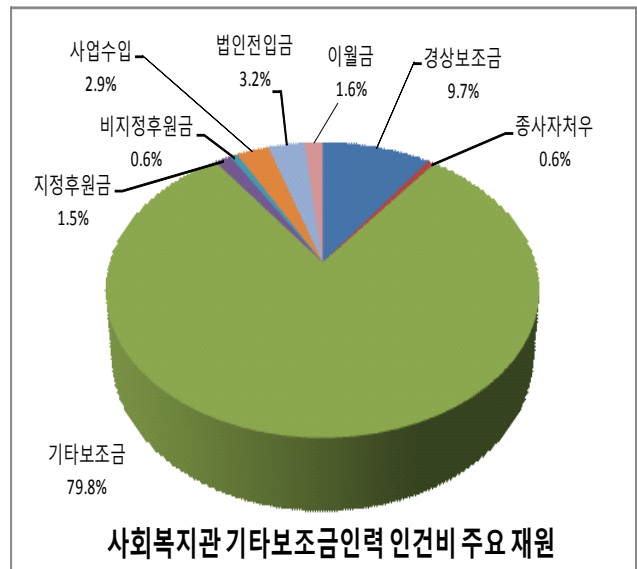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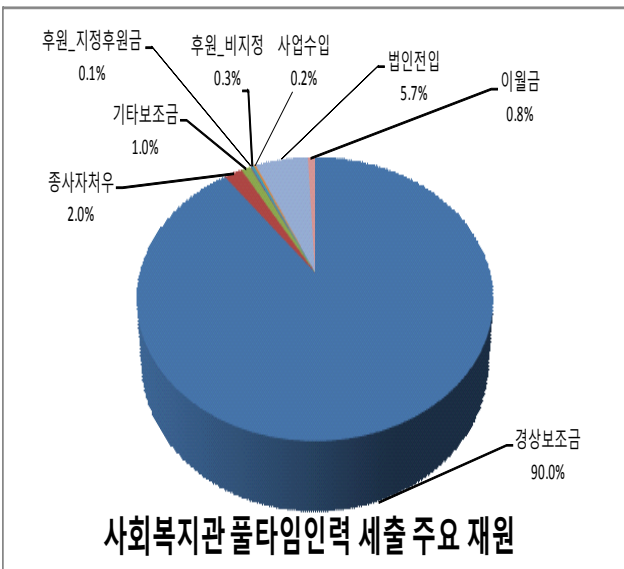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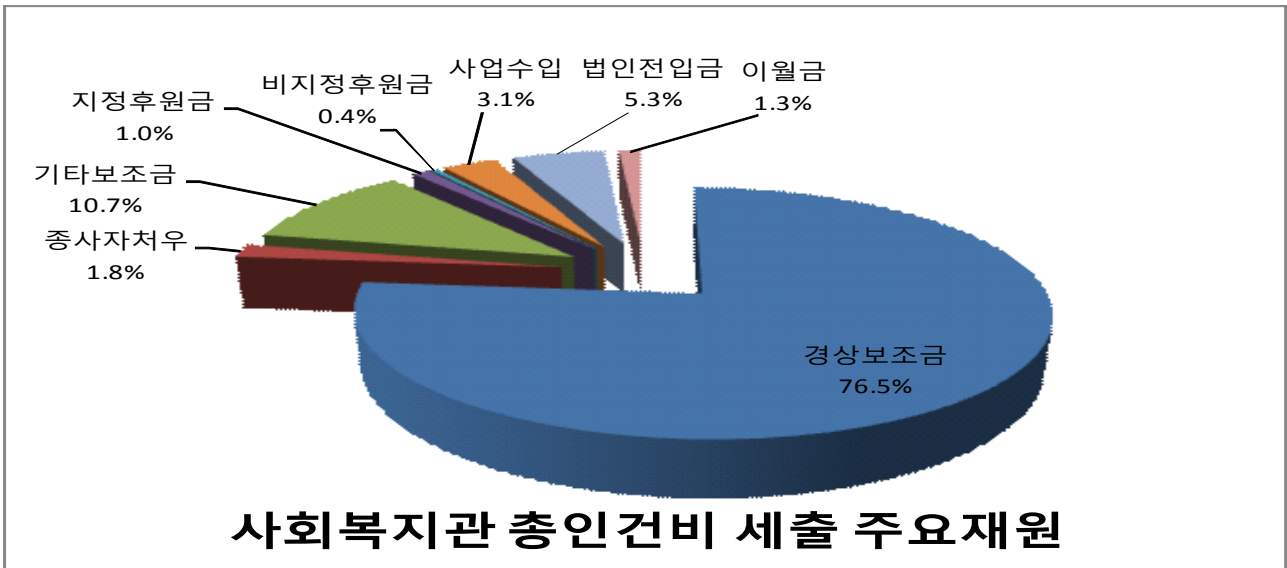


○ 법인전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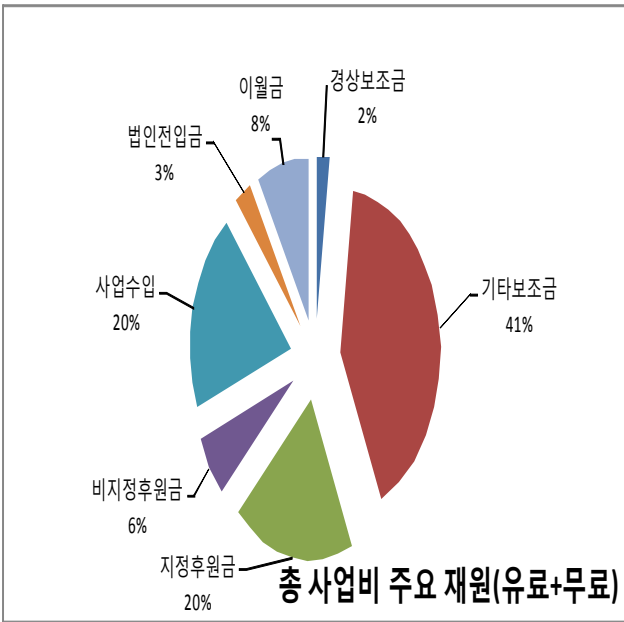


■ 주요 세출 별 자원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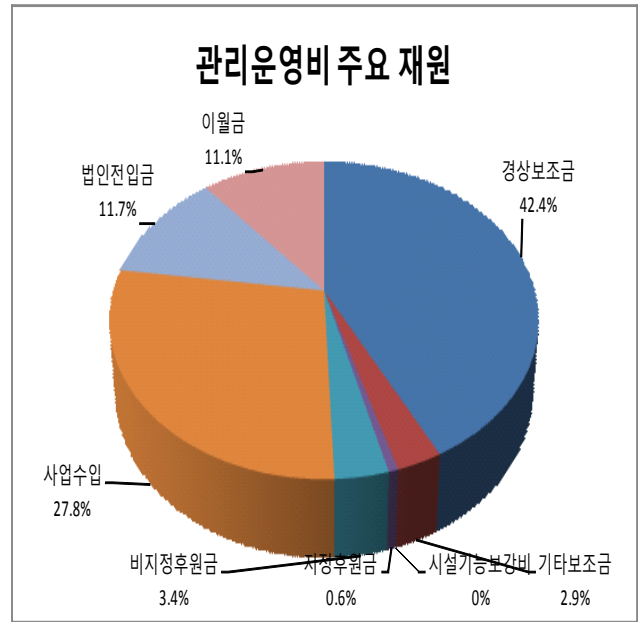
○ 인건비(플타임인력 & 기타보조금 인력 & 기타복지관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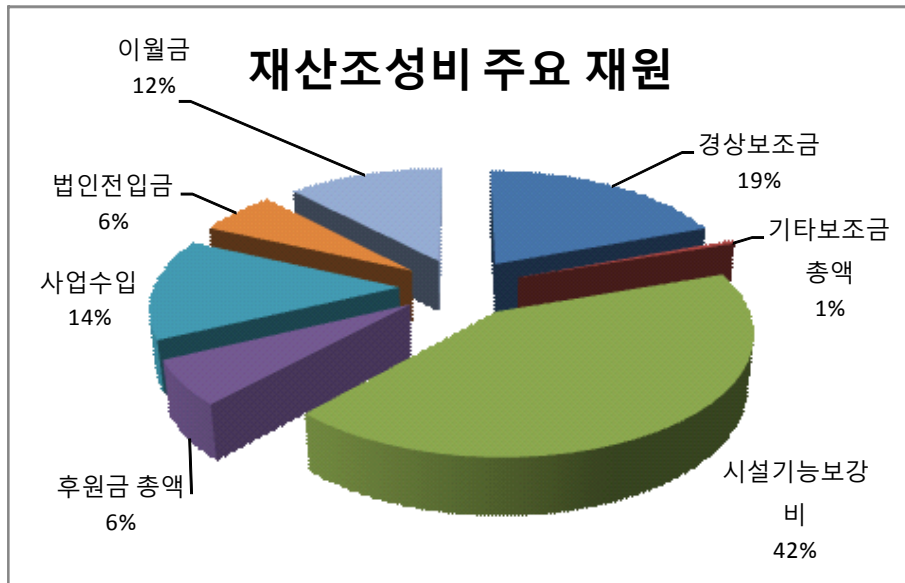
○ 사업비



○ 관리운영비



○ 재산조성비



2. 사회복지관 인력 규모 및 임금 수준(경상보조금 인력)

■ 시기별 평균인력

※경상보조금으로 보수기준 의거 인건비 지급인력, 별도보조금 인력 안전관리인 제외)

기관 연번	2012 (93개소)	2013. 5월 기준(87개소)	2009년~2013년 평균	2011년~2013년 평균
1	17.7	18	16.9	17.8
2	14.9	15	15.7	14.6
3	12.5	14	12.4	13.1
4	13.2	14	13.4	13.3
5	14.0	15	14.5	14.3
6	19.2	20	17.9	19.2
7	16.9	18	16.9	17.3
8	17.7	17	16.0	16.7
9	14.9	15	15.0	15.0
10	13.9	13	14.0	13.9
11	14.4	14	13.9	14.2
12	16.8	18	16.1	16.5
13	17.3	16	16.3	16.6
14	15.9	16	15.5	15.9
15	16.8	18	17.6	17.5
16	16.6	16	15.7	16.1
17	15.4	16	14.9	15.2
18	15.9	16	15.4	15.5
19	14.2	14	14.4	14.3
20	15.7	16	15.1	15.7
21	15.2	15	14.6	14.9
22	15.3	16	14.9	15.2
23	17.5	결측	16.1	17.9
24	15.3	15	14.8	15.3
25	15.8	15	16.2	15.9
26	16.0	16	15.5	15.7
27	15.9	16	15.6	16.0
28	18.0	18	16.6	17.2
29	16.9	18	16.6	17.2
30	16.8	17	16.1	16.6
31	14.9	결측	14.4	14.4
32	14.8	15	14.3	14.7
33	16.8	16	15.8	16.1
34	16.0	17	15.5	15.9
35	13.6	13	13.3	13.0
36	17.0	15	16.5	16.6
37	14.8	15	13.5	14.4
38	17.3	18	17.1	17.4

기관 연번	2012 (93개소)	2013. 5월 기준(87개소)	2009년~2013년 평균	2011년~2013년 평균
39	17.0	18	16.7	17.1
40	17.3	17	17.2	17.5
41	16.0	16	15.4	15.9
42	15.9	16	14.9	16.0
43	16.8	17	16.6	16.9
44	14.3	14	14.2	14.2
45	15.3	16	15.2	15.6
46	17.1	18	16.7	17.5
47	18.8	20	18.6	19.2
48	13.2	14	13.0	13.3
49	12.4	13	12.0	12.4
50	16.7	결측	15.2	16.3
51	12.5	13	11.8	12.2
52	15.0	15	15.0	15.3
53	14.6	15	14.8	14.8
54	14.8	15	14.7	14.6
55	16.1	15	15.9	16.2
56	14.0	18	15.6	15.6
57	16.8	18	16.7	17.2
58	16.3	19	17.0	17.5
59	19.8	21	18.5	19.7
60	15.8	16	16.5	16.3
61	16.7	17	15.6	16.7
62	16.3	16	15.8	16.1
63	14.8	14	14.8	14.6
64	11.0	13	12.1	12.0
65	13.8	결측	13.5	13.8
66	19.8	21	18.8	19.9
67	18.0	19	18.1	18.2
68	17.6	18	17.2	17.6
69	17.3	18	15.8	16.4
70	12.8	13	12.9	12.8
71	14.9	12	13.6	13.5
72	16.6	17	16.6	16.8
73	13.8	14	13.8	13.8
74	15.7	16	15.0	15.6
75	13.0	결측	12.9	12.9
76	12.8	13	13.6	13.2
77	20.7	21	20.5	21.2
78	13.7	14	13.4	13.5
79	12.4	14	13.9	13.7
80	17.8	18	17.3	18.1
81	15.9	16	15.4	15.9
82	15.3	15	14.5	14.7

기관 연번	2012 (93개소)	2013. 5월 기준(87개소)	2009년~2013년 평균	2011년~2013년 평균
83	16.8	17	16.5	16.6
84	17.5	18	17.8	17.8
85	16.0	17	15.1	16.1
86	15.5	17	14.3	15.0
87	14.3	13	12.6	13.1
88	17.0	17	16.6	17.0
89	17.1	17	16.4	16.9
90	17.3	17	17.9	17.5
91	15.1	15	15.6	15.2
92	12.5	13	12.7	12.5
93	12.9	13	13.7	13.0
평균	15.7	16.1	15.4	15.7

■ 구간별 인력규모

(단위: 명, 개소, %)

인력규모	2012 (93개소)	2013. 5월기준 (87개소)	2009년~2013년 평균(93개소)	2011년~2013년 평균 (93개소)
10명	0	0	0	0
11명	1	0	0	0
12명	2	1	4	3
13명	9	9	8	10
14명	11	10	14	12
15명	17	14	20	13
16명	17	17	20	22
17명	23	14	18	17
18명	8	15	5	11
19명	2	2	3	2
20명	2	2	0	2
21명	1	3	1	1

■ 2012/2013년 기관별 연 평균임금 수준(※4급 대리 기준 대비)

연번	평균호봉		연번	평균호봉		연번	평균호봉		연번	평균호봉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	9	9	24	4	4	47	7	8	70	6	7
2	8	10	25	6	7	48	6	8	71	7	11
3	7	7	26	6	7	49	7	7	72	6	6
4	7	9	27	6	7	50	7	결측	73	7	8
5	10	10	28	8	8	51	5	5	74	6	6
6	10	9	29	6	5	52	7	8	75	9	결측
7	6	6	30	7	7	53	6	7	76	7	7
8	4	6	31	6	결측	54	8	9	77	6	6
9	8	7	32	5	6	55	6	6	78	7	8
10	5	6	33	6	7	56	6	7	79	8	8
11	5	5	34	8	7	57	6	7	80	7	8
12	6	7	35	13	13	58	6	6	81	7	8
13	6	9	36	8	10	59	6	7	82	4	5
14	6	6	37	5	6	60	9	8	83	5	5
15	7	5	38	6	7	61	6	6	84	8	7
16	7	7	39	7	7	62	4	5	85	4	7
17	10	8	40	6	6	63	5	4	86	4	4
18	9	9	41	8	8	64	9	9	87	10	11
19	11	9	42	6	6	65	7	결측	88	6	7
20	6	7	43	6	5	66	5	7	89	6	7
21	7	8	44	11	9	67	5	5	90	8	10
22	8	9	45	6	6	68	6	6	91	6	7
23	4	결측	46	4	4	69	6	5	92	9	10
									93	9	10
비고	✓연 평균임금 산출방법 : 각 기관의 총인건비에서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종사자 복지수당 제외하여 4급 임금 근사치에 해당하는 임금 대비 ✓전체 연 평균임금 : 2012년 4급 7호봉 / 2013년 4급 7호봉										

Ⅲ. 신규 운영비 지원기준안 도출

1.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안 도출 기본방향

-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역할을 수행하고 서울시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인력 기준과 기본인력규모를 설정하여 복지서비스 수준 제고
- 현장의견 반영과 현 운영비 지원의 가변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본항목 설정
- 운영비 구성요소는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로 한정하고 항목별 지원
- 14년 예산규모를 고려한 단계적 적용

2. 사회복지관 최소인력 및 기본인력 설정

■ 기본방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관 사업 수행인력 및 행정인력 포함하며 부속시설 사업수행 인력 제외
- 100%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서울시 보수기준에 의한 인력만 포함
- 기타별도보조금으로 모든 사회복지관에 일괄 지원되는 안전관리인은 제외
- 2014년부터 적용된 현행 운영비 지원기준에 의해 기관에서 안정적 인력 규모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나타난 시기, 즉 3년간 평균인력을(16명) 최소 인력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최소인력 기준선 이상의 규모를 갖춘 기관은 구간을 정하여 기본인력 도출

○ 인건비는 2013년 기준 4급 7호봉을 적용

- 2013년 기준 4급 7호봉 연임금 수준

연기본임금 A	직무수당등 11개 연수당 ※가족수당 월 30,000 ※연장근로 10시간 B	연종사자 복지수당 C	총연임금		퇴직적립금 F=E/12	국민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사회 보험 사용자 부담금 G	경상보조금 지원임금액 ※종사자 복지수당 미포함 H=D+F+G	산재보험 [총인원* 종사자복지 수당 포함 총연금]* 0.007
			종사자복지 수당 미포함 D=A+B	종사자복지 수당 포함 E=A+B+C				
14,856,000	14,157,716	2,280,000	29,013,716	31,293,716	2,607,810	2,671,825	34,293,351	[X명 *31,293,716] *0.007

■ 사회복지관 필수인력 선행연구 검토

(단위: 명)

서울시 사회복지관 경상보조금지원 인력 (※안전관리인 미포함)			선행연구 결과		
2012	2013.5월기준	3년 평균 (‘11~’13)	서울시복지재단 (200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9)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0)
평균인력			필수인력		
15.7	16.1	15.7	19	22.1	24

■ 사회복지관 최소 및 기본인력 범주 설정(안)

1안		2안 (자문 및 실무위원회 최종 채택안)		3안				
기본 인력 구간	2011년~2013년 평균인력(93개소)	기본 인력 구간	2011년~2013년 평균인력(93개소)	기본 인력 구간	2011년~2013년 평균인력(93개소)			
16명 (최소 기준)	12명(3개소, 3%)	16명 (최소 기준)	12명(3개소, 3%)	16명 동일 적용	12명	4급7호봉 연임금		
	13명(10개소, 11%)		13명(10개소, 11%)		13명			
	14명(12개소, 13%)		14명(12개소, 13%)		14명			
	15명(13개소, 14%)		15명(13개소, 14%)		15명			
	소계 : 38개소, 41%		소계 : 38개소, 41%		16명	4급7호봉 연임금* 가중치 5%		
17명	16명(22개소, 24%)	17명	16명(22개소, 24%)		17명	4급7호봉 연임금* 가중치 10%		
	17명(17개소, 18%)		18명		17명(17개소, 18%)	18명	4급7호봉 연임금* 가중치 15%	
	소계 : 39개소, 42%				19명	18명(11개소, 12%)	19명	4급7호봉 연임금* 가중치 20%
18명	18명(11개소, 12%)	19명(2개소, 2%)	20명			20명	4급7호봉 연임금* 가중치 25%	
		소계 : 13개소, 14%				20명	20명(2개소, 2%)	21명
19명	19명(11개소, 12%)	21명(1개소, 1%)	21명		4급7호봉 연임금* 가중치 30%			
		20명(2개소, 2%)			20명		21명(1개소, 1%)	
		21명(1개소, 1%)					20명	
		소계 : 5개소, 5%				20명		

■ 기본인력 연차적 적용안

기존안(2안)		연차적 적용안				
기본인력 구간	2011년~2013년 평균인력(93개소)	기본인력 구간	2011년~2013년 평균인력(93개소)			
16명 (최소기준)	12명(3개소, 3%)	16명 (최소기준)	구분	2014	2015	2016
	13명(10개소, 11%)		12명	14명	15명	16명
	14명(12개소, 13%)		13명	15명	16명	
	15명(13개소, 14%)		14명	16명		
	소계 : 38개소, 41%		15명	16명		
17명	16명(22개소, 24%)	17명	16명(22개소, 24%)			
18명	17명(17개소, 18%)	18명	17명(17개소, 18%)			
19명	18명(11개소, 12%)	19명	18명(11개소, 12%)			
	19명(2개소, 2%)		19명(2개소, 2%)			
	소계 : 13개소, 14%		소계 : 13개소, 14%			
20명	20명(2개소, 2%)	20명	20명(2개소, 2%)			
	21명(1개소, 1%)		21명(1개소, 1%)			
	소계 : 3개소, 3%		소계 : 3개소, 3%			

■ 연차적 적용안에 따른 증감 인원 현황(2014년 기준)

인력증감(명)	개소	시설당 약 1.2명 증원
-1	1	
0	4	
1	63	
2	25	
3	0	
4	0	

3. 사회복지관 시설관리운영비 설정

■ 기본방향

- 사회복지관의 부속시설은 제외하고 사회복지관 사업수행을 위한 공간만을 포함한 시설관리운영비 도출
- 사회복지시설회계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운영비 항목(1.업무추진비 2.여비 3.수용비 및 수수료 4.공공요금/냉난방비 5.제세공과금 6.차량비 7.교육훈련비 8.기타운영비)으로 편성되는 경비만 산출
- 2012년 기준으로 산출된 시설관리운영비를 기초로 물가상승률 반영
- 최소 및 최대 인정면적 범위를 설정하여 면적규모로 인한 극단적인 운영비 지원 증액을 예방하고 현 지원액과의 차이를 적절 수준에서 유지

■ 사회복지관 시설관리운영비 설정(안)

(단위 : 원, %)

연도	전체	직접	간접	신규 적용안 :			
	시설관리운영비 / 1m ² 당 연간관리운영비	시설관리운영비 / 1m ² 당 연간관리운영비	시설관리운영비 / 1m ² 당 연간관리운영비	1m ² 당 연간관리운영비			
2012년	8,709,316,102 (100%) / 37,516	5,742,574,186 (65.9%) / 24,737	2,966,741,916 (34.1%) / 12,779				
2013년 ※전년도 대비 2.55%	8,931,403,663 / 38,473	5,889,009,828 / 25,367	3,042,393,835 / 13,105				
2014년 ※전년도 대비 2.90%	9,190,414,369 / 39,588	6,059,791,113 / 26,103	3,130,623,256 / 13,485	1안	2안	3안	4안 (자문 및 실무위원회 채택)
					70%	75%	80%
				직접 시설관리 운영비	전체 시설관리운영비 (39,588원) 대비		
	26,103 (26,000)	27,712 (28,000)	29,691 (30,000)	31,671 (32,000)			

※ 2013년도 2.55% 산출은 LG 경제연구소(2012)와 국회예산정책처(2012)의 2013년도 국내 경제전망 및 중기경제전망 자료 참고.

4. 신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요약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운영비 증액 조정
평균3년 인력기준 (11년~13년)	시설전체 연평균 관리운영비 80% 적용(32,000원)	1억 이상 증액 기관 대상
시설별 기본지원 인력(16명 ~20명 연차적 지원) * 4급 7호봉 임금(34,293,351원)	사회복지관 전용 면적(최소 1,000m ² 최대 4,000m ² 면적 조정) * 32,000원	- 인력증원 시 증액의 80% 지원 - 인력증원 없을 시 60% 지원 ※ 증원 1명 소요예산(34,000천원)과 지원액 차등 간격의 완화 고려하여 증원 유무에 따른 간격 20% 조정

※ 복지관 면적 범주

구분	내용					합계
면적	1000m ² 미만	1000m ² 이상 ~ 2000m ² 미만	2000m ² 이상 ~ 3000m ² 미만	3000m ² 이상 ~ 4000m ² 미만	4000m ² 이상	268,455m ²
기관수	2 개소	44 개소	23 개소	14 개소	10 개소	93 개소

■ 참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참고(항목별 예산 지원)

- 장애인복지관은 이전에 정원(26명~90명/ 평균 시설당 35명) 존재
- 최대 인정면적 4,000m²

(단위: 천원, 급, 호봉)

시설개관 범주	인건비	1m ² 당 시설관리운영비(천원)
5년 미만 (59개월)	정원 * 4급 6호봉	60
5년 이상~10년 미만 (60개월~119개월)	정원 * 4급 8호봉	
10년 이상~15년 미만 (120개월~179개월)		72
15년 이상~20년 미만 (180개월~239개월)		84
20년 이상~25년 미만 (240개월~299개월)		96
25년 이상~30년 미만 (300개월~359개월)		
30년 이상 (360개월 이상)	정원 * 4급 9호봉	

IV. 신규 기준안 소요예산(2014년 기준)

(단위: 천원)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운영비 증액 조정	2013년 총 소요예산(천원)			2013년 대비 증액 규모(천원)		
			합계	서울시 (90%)	자치구 (10%)	합계	서울시 (90%)	자치구 (10%)
평균3년 인력기준 (11년~13년)	시설전체 연평균 관리운영비 80% 적용(32,000원)	1억 이상 증액 기관 대상						
시설별 기본지원인력 (16명~20명 연차적 지원 * 4급호봉임금 34,293,351원	사회복지관 전용 면적(최소 1,000m ² 최대 4,000m ² 면적 조정) * 32,000원	-인력증원 시 증액의 80% 지원 -인력증원 없을 시 60% 지원 ※증원 1명 소요예산(34,000천원)과 지원액 차등 간격의 완화 고려	62,268,480	57,941,464	4,327,016	▲3,986,961	▲3,682,688	▲304,273

■ 신규 운영비 지원 기준에 따른 운영비 증감액 규모현황

구분	증액규모	기관 수
증액	1억원 이상	7
	5천만원~1억원	31
	1천만원~5천만원	40
	1천만원 미만	16
	소계	94
감액	1백만원~1천만원	0
	1천만원이상	0
	소계	0

V. 신규 기준안 적용 방안

- 인건비 및 시설관리운영비로 구분한 항목별 예산 지원
- 불용 인건비 서울시에 반납
- 인건비를 시설관리운영비로 전환하여 지출할 수 없으나 시설관리운영비는 인건비 부족분으로 지출 가능

토론 1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안에 관한 토론

이미성
(서울시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토론 1.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안에 관한 토론

이미성 † 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토론 2

사회복지관 표준인력 마련의 필요성

윤귀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토론 2. 사회복지관 표준인력마련의 필요성

윤귀선 † 서대문종합복지관 관장

1906년 원산 인보관 운동에서 시작된 사회복지관 사업이 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에 가장 많은 9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43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민간에 의해 운영되던 사회복지관은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1988년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 훈령(현 고시)으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및 국고보조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관의 규모에 따른 직종별 최저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로서 인력의 최저기준이 존재하였다. 1998년 위 조항이 삭제되게 된 것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을 제외하고 광역자치 도(道)는 물론이고 인천, 광주, 울산 등 광역시 가운데에도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부재하여 인력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과 위, 수탁 시 인력기준 미 충족으로 잦은 지적과 논란이 발생하였다.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임대아파트 등 폭증하는 지역적, 시대적 복지 수요에 따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울시에 줄기차게 요구하였으나 되돌아오는 답변은 정부의 최저기준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관의 요구가 번번이 묵살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보건사회부 입장에서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최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못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직종별 최저배치기준마저 삭제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당시 한국사회복지관협회나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지 못한 채, 당면한 이해관계에 따라 ‘직종별 최저배치기준’ 삭제를 결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적정 표준인력은 고사하고 최저기준조차 없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역할 모색과 기능 정립은 차치하고라도 근시안적인 대처로 운영비 지원 기준의 가장 큰 골간인 인력기준조차 없는 유일무이한 사회복지시설로 그 존재마저 위협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한 뼈아픈 과거로 기록되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복지의 수요 확대는 물론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가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가는 추세와 복지수요가 폭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관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위한 적정 표준인력의 기준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서울시는 1999년 시장방침을 통해 사회복지관 설립 및 운영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지금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 달리 표준사업 및 인력 등 보조금 지원의 근거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2012년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연구된 바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표준사업 및 표준인력(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장 오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및 복지수요를 반영한 표준사업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인력의 정수를 정해 인건비를 산출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운영비의 산출과 표준사업수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관장 워크숍과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총회를 통해 현 운영비 지원기준의 폐해에 공감하고 폐기에 동의하였음을 상기하면, 어느 기관도 현 수준보다 적어지지 않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차례의 실태조사와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도출되어진 본 연구 성과가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매년 기준인력의 증원과 이에 따른 운영비 지원의 확대가 전제되어진다면 현행 운영비 지원의 가변성을 제거하고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의 항목별 지원의 문을 열게 된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토론 3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안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 계획

윤석현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 주무관)

토론 3.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안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 계획

윤석현 †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 주무관

우리시는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주민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금(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복지재단과 공조

- '09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근거로 '10년부터 현재까지 4등급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행정력 낭비 및 복지관별 과도한 경쟁 유발 등으로 합리적 지원을 마련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
- 운영비 구성요소를 시설관리운영비와 인건비로 한정하는 등 복지관 운영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11월중) 시 까지 합리적으로 최종 보완 예정임

연구결과 반영 검토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결과는 市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4년에는 반영이 어려우며, '15년 이후 연차별로 반영 예정임

Memo

Memo